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 밸류웨이 증권투자신탁[주식]

□ 변경 사유 : ① 책임운용인력 변경 (한규민 → 오대식)

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③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 효력발생일 : 2022. 10. 7.

□ 변경 내용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의 경우 2 년)이 되는 날 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투자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2. 6. 30. 기준	2022. 8. 31. 기준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	한규민 2022. 6. 30. 기준	오대식 2022. 8. 31. 기준
투자자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의



트러스톤자산운용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 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경우 2 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u>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5시 30 분 이전: <u>제 2 영업일</u> 기준가격으로 매입 15 시 30 분 경과후 : <u>제 3영업일</u> 기준가격으로 매입	15 시 30 분 이전: <u>2 영업일</u> 기준가격으로 매입 15시 30 분 경과후 : <u>3영업일</u>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방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5시 30 분 이전: <u>제 2 영업일</u> 기준가격으로 <u>제 4 영업일</u> 에 지급 15 시 30 분 경과후: <u>제 3 영업일</u> 기준가격으로 <u>제 4 영업일</u> 에 지급	15 시 30 분 이전: <u>2 영업일</u> 기준가격으로 <u>4영업일</u> 에 지급 15 시 30 분 경과후: <u>3 영업일</u> 기준가격으로 <u>4영업일</u> 에 지급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	<u>한규민</u> 2022. 6. 30. 기준	<u>오대식</u> 2022. 8. 31. 기준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	<u>한규민</u> 2022. 6. 30. 기준	<u>오대식</u> 2022. 8. 31. 기준
5. 운용전문인력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책임운용역 : <u>한규민</u> (2020.08.26~현재) (신 설)	책임운용역 : <u>한규민</u> (2020.08.26~2022.10.6) 책임운용역 : <u>오대식</u> (2022.10.7~현재)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 투자 대상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 트러스톤 밸류웨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 트러스톤 밸류웨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가) (생략)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 ⑤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u>금융투자업규정 제 4-54 조 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u>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 ⑤ (현행과 같음)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트러스톤 밸류웨이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트러스톤 밸류웨이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u>금융투자업규정 제 4-54 조 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u>

		① ~ ⑤ (생략) (나) (생략)	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 ⑤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u>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u>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

		일로부터 <u>제 2 영업일</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제 3 영업일</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③ (생 략)	일로부터 <u>2 영업일</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u>3 영업일</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③ (현행과 같음)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나. 환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①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제 2 영업일</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제 4 영업일</u>에 환매금액 지급 ②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제 3 영업일</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제 4 영업일</u>에 환매금액 지급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①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2 영업일</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4 영업일</u>에 환매금액 지급 ②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u>3 영업일</u>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4 영업일</u>에 환매금액 지급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 6. 30. 기준</u>	<u>2022. 8. 31. 기준</u>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u>2022. 6. 30. 기준</u>	<u>2022. 8. 31. 기준</u>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u>2022. 6. 30. 기준</u>	<u>2022. 8. 31. 기준</u>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u>제 5 영업일</u>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u>5 영업일</u>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 ② (생략) ③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2) ~ (3) (생략)	(1)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u>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u>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u>)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⑦ (생략) ⑧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생략)	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u>법 시행령 제 81조제 3항제 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u>법 시행령 제 81조제 3항제 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현행과 같음)
--	--	--	--